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28 | 2024.03.25 (2024.03.18~03.24)**I. 정부 주요 정책 동향****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3.18~03.24)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제21차 민생토론회가 3/19(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을 되살리는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비용 경감, 문화예술로 도시 품격 제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22차 민생토론회는 3/21(목) 강원도 원주에서 어르신 1천만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개최되어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정부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시한 주요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①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제공 ②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 ③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 ④ 어르신과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 경감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 원주에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한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도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도의 보건 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①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②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③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④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등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 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기반 강화 등) ②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 두터운 약자 보호,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 등) ③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간병비 부담 경감체계 구축, 국민돌봄 통합지원 등) ④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출산·양육 부담 경감, 연금개혁 지속 추진,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 등)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24.7.10. 시행)에 따라 세부 규정을 보완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하고,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및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시설물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상향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시행령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기초점검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하여, 보다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그리고 현행 법령상으로는 특정 항공사들 간의 운수권 등 이전 근거가 부재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당사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유지·복원을 촉진하고,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하기 위해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또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시설 증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구제를 완화하기 위해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관리 및 녹지지역에 대안학교 등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제한 완화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의 공장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4개 법률을 정비하는 등의 입법예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 공개(제33조제2항)와 관련하여 현행 법은 확률 미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며,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구제가 쉽지 않아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2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관계부처 합동) · 6
- 제22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관계부처 합동) ······ 10
- '인공지능(AI) 보안기업 육성사업', '24년 기업지원 사업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원) ··· 14
-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계획 발표 ······ 15
- 2024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21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환경부, 금융위원회) ······ 26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30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30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31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3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 3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32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 33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부) ······ 33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환경부) ······ 33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 3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3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3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35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국토교통부) ······ 3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 36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방송통신위원회) ······ 36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 37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7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 38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 3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3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3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 4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40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41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4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43
•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4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4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45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46
•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법제처)	46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4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금융위원회)	48

3. 법률 발의(제출)안 [바로가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3.18~03.24) [바로가기](#)

- [지적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
- [건설/부동산]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지적재산권] UPC 항소심 법원의 최초 실체판단 사례 – 가처분 사건의 증명 정도에 관한
“more likely than not” 기준의 제시
- [ES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
- [해외 규제] EU 상주대표회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문체부, 국토부)

제21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

2024-03-19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함

<정책 방향>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구도심을 비롯한 도시 활력을 회복

3대
혁신
과제

민생을 되살리는
노후 도시공간 개선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 경감

문화예술로
도시 품격 제고

세부
과제

1. 노후 저층주거지 획기적 개선 : 「뉴:빌리지」 도입
2.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 해소
 - 주거지 정비 부담 완화 및 사업성 확대
 -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공공지원
 - 빈집 정비 활성화 및 민간 참여 확대
3. 풀뿌리 상권 활성화
 - 노후상가 리모델링 등 기금융자 지원 확대
 - 첨단기술을 활용한 만성 주차난 해소

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신규 도입
 -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 '24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확대
3. 청년·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
 -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생아특례 대출 확대
 - 주거급여·주거상향 지원
4.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 청약 무주택기준 완화

1.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 마포·홍대 복합예술벨트
 - 서울역·명동·남산 공연예술벨트
 -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2. 문화예술로 도시 브랜드화
 - 대표 브랜드축제 육성
 - 풀뿌리 예술단체 육성
 - 문화도시 육성
 - 로컬100 확산
 - 산업과 문화 융합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생을 되살리는 노후 도시공간 개선

◦ 노후 저층주거지 획기적 개선 : 「뉴:빌리지」 사업 도입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 (affordable housing)을 공급
- 마을꾸미기 위주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재편

신축 세대규모별 편의시설 지원항목(예시)

지원 시설	10호 미만	11~50호	51호~100호	100호 초과
방범CCTV · 보안등	○	○	○	○
주차장	○	○	○	○
관리사무소 · 북카페		○	○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
돌봄시설, 복지관 등				○

* 상기 편의시설 지원항목은 예시로,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가이드라인 수립 시 최종 확정

◦ 주거지 정비 사각지대 해소

- 주거지 정비 부담 완화 및 사업성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 주민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공공이 지원 (주거재생혁신지구)
- 빈집 정비 활성화 및 민간 참여 확대

◦ 풀뿌리 상권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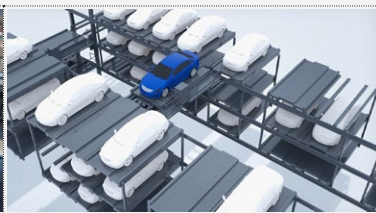
- 노후상가 리모델링 등 기금융자(씨앗융자*) 지원 확대

* 재래시장 등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활성화 목적의 상가리모델링 등 자금 지원(現 금리 2.2%)

- 첨단기술을 활용한 만성 주차난 해소



기존 : 평면적 주차장



개선1 : 오토발렛



개선2 : 주차복합타워

②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 경감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가 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신규 도입

’24~’25년 「든든전세주택」 공급계획

든든전세주택	’24년	’25년	합계
계	8.5천호	16.5천호	25천호
LH 든든전세주택	5천호	10천호	15천호
HUG 든든전세주택	3.5천호	6.5천호	10천호

* 향후 「든든전세주택」 수요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 지속 보완·발전 추진

- 「신축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23년 0.8만호→’24년 3.5만호→’25년 4만호)

’24~’25년 「신축매입임대」 공급계획

신축매입임대	’24년	’25년	합계
계	3.5만호	4만호	7.5만호
당초 공급계획	3만호	3만호	6만호
추가 공급계획	+0.5만호	+1만호	+1.5만호

* 향후 「신축매입임대」 수요 및 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 지속 보완·발전 추진

LH 「든든전세주택」, 「신축매입임대」 조치사항

- (제도개선) 건축 중 주택매입을 허용하고, 접수 후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공급 조기화(2개월)
- (세제지원) 민간 사업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세·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27.12월)
 -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現: 10%)을 확대하되, 세부 감면율은 협의 거쳐 확정
- (경영평가) 적극적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LH 경영평가 시 국가정책 협조도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부여

- ’24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확대

○ 청년·취약계층 등 주거비 경감

- (월세)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 개편(안)

기준	현행(2차 사업)	개선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폐지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좌동
지원규모	월 최대 20만원, 12회	월 최대 20만원, 24회
사업기간	신청 ’24.2~’25.2월, 지원 ’24.3~’26.12월	신청 좌동 지원 ~’27.12월로 연장

*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혼인, 중위소득 50% 이상 등) 외에는 원가구 소득도 고려

- (전세) 전세반환보증 가입자 보증료 지원 확대
- (전세·자가)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 (민간임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1개 필지)을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보통 리츠 방식으로 운영 예상

청약 시 非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기준

기준(공시가격)	현행	개선
수도권	1.6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지방	1.0억원 이하	2억원 이하

③ 문화예술로 도시 품격 제고

○ 문화예술 대표공간 조성

- 서울 도심 내 문화예술 지형을 변화시킬 대표공간 조성

복합예술벨트, 공연예술벨트 개요

마포 · 홍대 복합예술 벨트	서울역 · 명동 · 남산 공연예술 벨트
	
• 한국 산업화의 상징인 옛 화력발전소를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예술, 언더그라운드 예술의 중심공간으로 조성 • 홍대 청년층 연계 대안적 예술 소비 창출	• 남산 자유센터 부지를 공연예술 창작센터로 전환하고,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등과 연결하여 서울역 · 명동 · 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창작의 중심공간화

- 도시 특성을 바탕으로 전국 권역별 문화예술 거점 인프라 조성

권역별 문화예술시설 조성 개요

경기·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 문화예술로 도시 브랜드화

- 도시를 대표하는 예술축제, 예술단체 육성
- 도시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

관계부처 합동
(복지부, 국토부 등)

제22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 어르신에게 필요한 주거·식사·여가·건강·의료·돌봄 지원
확대 등

2024-03-21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어르신 1천만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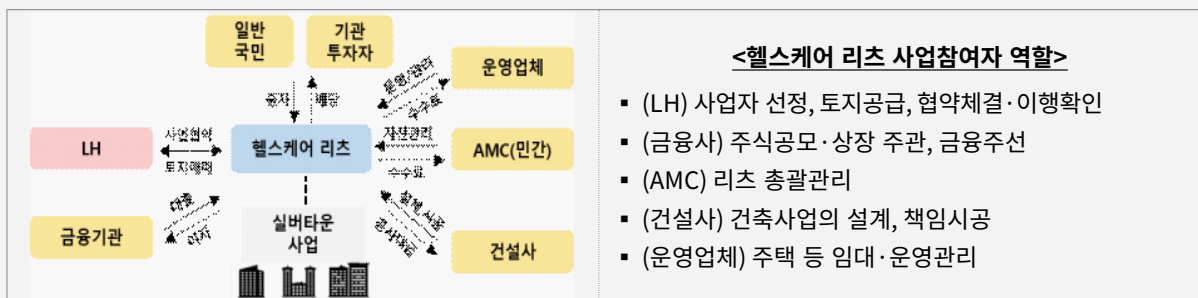
정부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시한 주요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①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제공

- 식사·여가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
-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
-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확대(1천→3천 호)하고, 유형을 다변화하여 도심 공급을 유도
-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거동불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파트 공용공간을 활용한 식사서비스를 활성화
- 어르신 안전보장을 위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학대예방체계와 고령자 교통안전을 강화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방식 다변화 방안>

공급체계	신축 ^{현행}	리모델링 ^{신규}	민간제안 ^{신규}
입지특성	지역 중심	도심 중심	도심 & 지역
공급방식	신규 건설	노후임대 리모델링	민간 공모 후 신축매입
공급목표	연 1천 호	연 1천 호	연 1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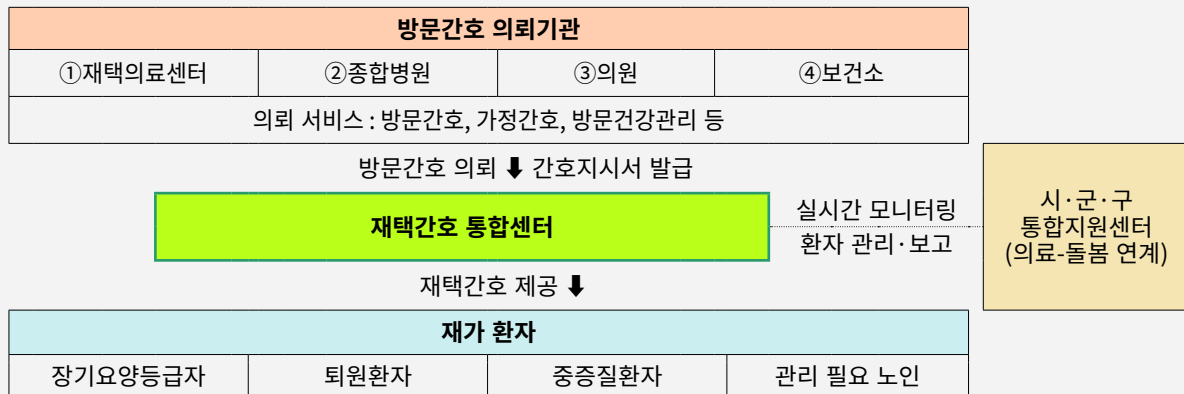
②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

-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
-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 올해까지 2천 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
-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③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서비스를 구축

-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24년 95개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인하 (30%→15%)
-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 ('24.7~)
-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

< 재택간호 통합센터 연계 모형(안) >



④ 어르신과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 경감

-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 어르신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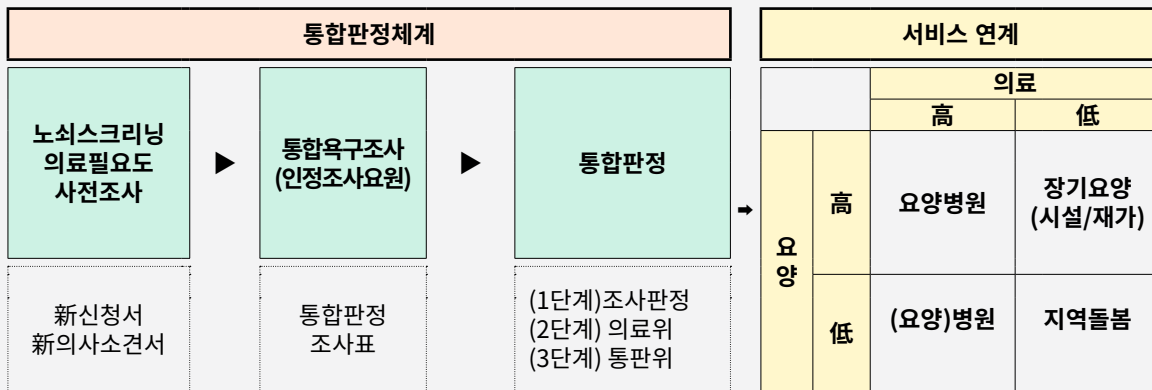
< 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안) >



- ① (1단계) 대상환자, 선정방식, 환자당 간병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요양병원 20개소 대상 시범모형 추진** ('24.4~'25.12)
- ② (2단계)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자원 등을 정밀 추계하여 **모형 고도화 및 본사업 준비** ('26.1.~'26.12.)

- 어르신의 안전한 퇴원을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회복기 병상 도입방안을 마련
-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

< 통합판정체계 개념도 >



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음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 (대상) 기존 선도사업('19~'22)에서 불명확했던 **지원 대상**을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체화**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급성기(요양) 병원 퇴원환자 등
- (제공방법) 의료·요양 욕구에 대한 **통합적 조사**를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 재택의료, 재가 요양·돌봄
등 **적정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
- (기반) 서비스 신청·조사, 대상자 정보관리 및 모니터링 등 전달체계를 **시·군·구 중심으로**
개편하여 **서비스 간 실질적 연계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비전 및 목표>

비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요 목표	▶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아파도 내 집에서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건강하실 때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①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② 충분한 식사 제공 ③ 일상 생활 지원 ④ 어르신 안전 보장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① 활력있는 백세시대 ② 일을 통한 사회참여 ③ 즐거운 디지털 교육·여가
편찮으실 때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요양	① 재택의료 활성화 ②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요양서비스 ③ 맞춤형 치매관리 제공
	부담 덜어주는 간병·돌봄	① 걱정없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② 어르신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③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반 조성		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② 재정 기반 모색 등

그리고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 원주에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함. 또한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도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도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함

이어 보건의료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지원을 위해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함

또한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원

‘인공지능(AI) 보안기업 육성사업’, ’24년 기업지원 사업 공고

- 제품 개발→사업화→확산→글로벌 기업 협업 등
4단계 사업에 총 48억 원 지원

2024-03-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국내 보안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24년 총 48억 원 규모(총 4단계, 최대 19개 과제)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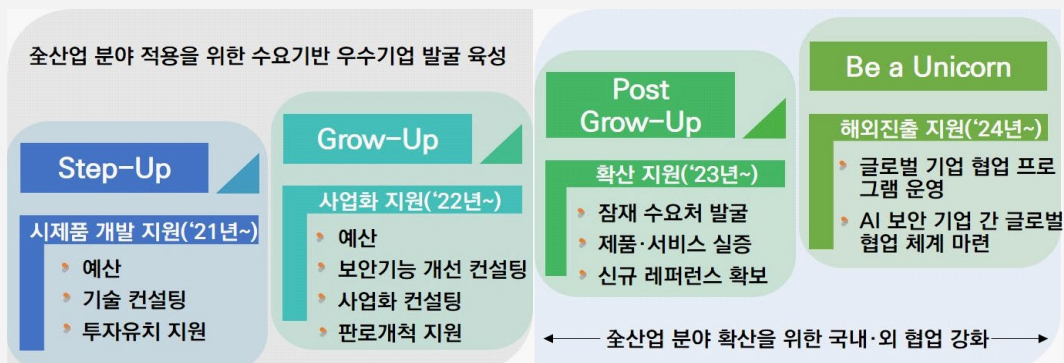
과기정통부와 KISA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AI 보안 유망 기업 집중 육성사업”을 추진해 올해로 4년 차를 맞고 있음

지난 3년간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1단계)과 사업화 지원(2단계)을 위해 총 45개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3~3.9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기술·사업화 컨설팅, 판로 개척, 투자 유치, 홍보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을 육성해 왔음

사업 4년 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실증환경 확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AI 보안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3단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확산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보안 상용제품의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를 목표로 하며,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 다양한 수요기관과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판로개척의 기회까지 제공하게 됨

또한 올해는 ‘AI 보안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4단계)을 최초로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보안 기업에 특화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며, 최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의 기술·비즈니스 컨설팅, 마켓플레이스 등록 지원, 전시회 참여 등 양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인공지능 보안기업 육성사업 단계별 지원 개요 >



이처럼 단계별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보안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4단계 지원 사업 중 1, 2단계 지원사업인 ‘AI 보안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총 10개 과제, 최대 25억 원 규모)과 ‘AI 보안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총 5개 과제, 최대 15억 원 규모)은 공모를 통해 기술력과 잠재력이 큰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임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①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②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③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④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 등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과제를 제시한 ‘2024년 행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이에 행안부는 국정운영 중추부처로서, 중앙과 지방이 ‘현장’ 중심으로 ‘협업’과 ‘행동’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 「행동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갈 계획임

비전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문제해결 중심 「행동하는 정부」를 이끄는 행정안전부

1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1. 촘촘한 국토 활용으로 지역 공간의 경쟁력 제고
2.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 보장
3. 미래를 대비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 구현

2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1.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확립
2.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역량 확보
3.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인프라·제도 혁신
4. 국민안심을 위한 일상 속 안전 강화

3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1.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2. 편리하고 빈틈없는 공공서비스 제공
3. 일하는 방식 전면 개선으로 문제해결형 정부 구현

4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

1. 서민을 우선하는 지역민생정책 추진
2. 취약계층 및 재난피해자 생활안전망 강화

5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

1. 연대와 나눔으로 성숙한 지역사회 조성
2. 시대·지역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 가치 확산

【 15대 중점과제 】

■ 지방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지원

- 지역별로 진행되는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제, 메가시티 등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적극 지원
-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 계층·구역·기능 개편방안 검토

■ 지방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기반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시(약 3조원 규모 지역개발 투자)
- 고향사랑기부 활성화(기부한도 연 5백만원→2천만원, '25년~),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

■ 지방 기업 지방이전 및 지역기업 활동여건 개선

- 기회발전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담금 등 준조세, 지역건설산업 규제 등) 집중 해결

■ 안전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 안심환경 조성

- 스쿨존 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확대, 방호울타리 및 통학로(보도) 설치
-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 확대('23년 188→'25년 1,000개교), 안전체험시설 7개소 추가 건립, 어린이 히어로즈 운영

■ 안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재난대응역량 확보

- 붕괴위험 급경사지 발굴('24~'25년 2만 개소)·정비, 소화천 스마트 계측시스템 설치
- 지하차도 통제기준 명확화(15cm 침수시) 및 진입차단시설 설치 지원, CCTV 지능형 관제

■ 안전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 강화

- 피해우려지역 특별관리대상(고령자 등) 대피지원단 1:1 매칭 및 119안심콜 연계
- 재난·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공동활용 및 복합대피시설 구축, 임시조립주택 다양화

■ 디지털 행정전산망 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

-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3대 추진전략, 12개 과제 차질없는 이행
- 범정부 거버넌스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디지털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

■ 디지털 ‘간편한’ 공공서비스 확대

- 구비서류 제로화('26년 약 1,500종) 및 불필요한 인감증명 정비('25년 2,145건), 민원절차 간소화
- 디지털지갑('24.12월), 모바일신분증('24년 재외국민증, '25년 주민등록증), Any-ID(시범, '24.上)

■ 디지털 맞춤형 혜택의 선제적 알림시대 본격 개막

- 개인별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시범 개시('24.12월)
- 국민비서(구뽀)에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가미한 ‘지역형 국민비서’ 도입

■ 민생·통합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지방세제 개편

- 출생가구와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강화
- 장애인·유공자의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연장, 자동차세 과세 형평성 재검토

■ 민생·통합 생계 위기가구 조기 파악 및 지원 강화

- AI콜 상담으로 위기가구 신속 파악,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적용 지자체 확대
- 생계형 체납자 정보를 시스템으로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히 지원

■ 민생·통합 ‘온기나눔’ 범국민운동 확산

- 다양한 기부·자선행사를 온기나눔 범국민운동으로 통합·홍보
-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인센티브 강화,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운영

■ **디지털 ‘간편한’ 공공서비스 확대**

- 구비서류 제로화('26년 약 1,500종) 및 불필요한 인감증명 정비('25년 2,145건), 민원절차 간소화
- 디지털지갑('24.12월), 모바일신분증('24년 재외국민증, '25년 주민등록증), Any-ID(시범, '24.上)

■ **디지털 맞춤형 혜택의 선제적 알림시대 본격 개막**

- 개인별 상황을 파악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시범 개시('24.12월)
- 국민비서(구뵘)에 지역 맞춤정보 제공을 가미한 ‘지역형 국민비서’ 도입

■ **민생·통합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지방세제 개편**

- 출생가구와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 강화
- 장애인·유공자의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연장, 자동차세 과세 형평성 재검토

■ **민생·통합 생계 위기가구 조기 파악 및 지원 강화**

- AI콜 상담으로 위기가구 신속 파악, 복지등기우편서비스 적용 지자체 확대
- 생계형 체납자 정보를 시스템으로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신속히 지원

■ **민생·통합 ‘온기나눔’ 범국민운동 확산**

- 다양한 기부·자선행사를 온기나눔 범국민운동으로 통합·홍보
-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인센티브 강화,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운영

■ **미래·행동 문제해결 중심 정부간·지자체간 협업 촉진**

- 부처 간 인력을 교류·파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협업형 조직·정원 운영
- 자치단체간 상호 구속력을 갖는 ‘공공협약’ 제도 도입,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 **미래·행동 행정에 AI 접목으로 정부 경쟁력 제고**

- AI 기반 자동회의록 및 행정비서 도입
- 전 부처가 활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추진('24년 BPR/ISP)

■ **미래·행동 지방자치 30주년(2025년)에 대비한 체계적 준비**

-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발판 마련을 위한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 일반·교육자치간 업무연계 강화 및 재정구조 합리화, 특행기관 정비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정책고객들에게 도움되는 시책 30선

정책고객 1 : 국민



1 빈집 정비 혜택 부여

5년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재산세
납부세액 산출

3년간

별도합산 유지



2 서민·취약계층 세금 부담 완화

출생가구

① 실거주 목적, ②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500만 원 한도)

서민주택

1억원 미만 40㎡ 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

취약계층

무주택 임차인이 임차한 소형·저가 주택 매입시
생애최초 감면자격 유지

장애인·유공자

생활·보철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연장



3 취약계층 지원 강화

위기가구

위기정후가 있는 가구

자동 시콜 상담으로 확인

생계형 체납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재난피해자

지원사항) 통합 안내

소통창구) 피해자·유가족 전담기구

신속 구성 및 창구 일원화

임시주거) 조립주택 형태 다양화 및

공급방식 변경

지원확대) 농·축산분야 피해지원 확대 검토



4 한 번에 맞춤형으로 안전정보 제공

대국민 안전정보 6종 →
안전24로 통합, 위치 기반 원스톱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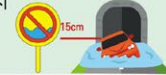


5 침수로 인한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

출입통제

15cm만 잠겨도 출입 전면 통제

인력·시설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진입차단시설 설치



6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강화

통학로 학교부지 활용해 추가 확보

횡단보도 '시 스마트 횡단보도'

매년 100개소 설치
(어린이 인식 → 보행신호 연장)



7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역주행 방지 위해 1,061개소에
안전부품 설치('24년)



8 간편한 신원인증과 공공 웹사이트 로그인

신원인증

· 모바일 재외국민증('24년), 주민등록증

('25년) 도입

·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로그인

민간 ID 등으로 한 번만
로그인 → 여러 공공 웹사이트 이용 가능



9 구비서류 제로화

구비서류 1,498종 업무의 서류 감축
(~'26년)

인감증명 서류제출이 필요없도록
2,145건 정비(~'25년)



10 국민이 찾기 전에 공공서비스 미리 알림

혜택알리미 개인별 상황조건분석 →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알아서 알려주는 서비스

지역형 국민비서

국민비서 '구백'가 지역별 생활정보
취약계층 지원 정보 등 안내



11 모든 국민에게 온기 전달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추진,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강화, 기부주간 운영



행정안전부 정책고객들에게 도움되는 시책 30선

정책고객 2 : 기업·소상공인

12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 세제 혜택

- 부동산 취득세(법 50%+조례 50%)
- 재산세(법^{5년간} 100%+조례^{추가5년} 50%) 등 감면



1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중점 해결

준조세 지방규제 개선, 지역건설산업 규제 개선 등



14 지역 대규모 사업 재원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 연계
→ 출자금 대비 약 30배 규모 지역투자(3조 원 규모)



15 기업-지자체 인재 교류 제도화

기업 애로해소 및 상호간 역량 강화



16 정부 보유 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연관 데이터는 패키지로, 지자체별로 형태가 다른 데이터는 통합해서 제공



17 지방계약 낙찰자 결정 시 우대

영세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과거 납품실적의 10% 가산 반영



18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추가지정
약 3,000개 업소

이용객 혜택
캐시백 등 제공

배달료 지원
약 5,000개 외식업소 연 200만원씩 지원



19 정보화 사업 안정성 강화

대기업 참여 허용
700억 원 이상 사업

인프라 개선
1·2등급 시스템 이중화, 노후장비 교체



행정안전부 정책고객들에게 도움되는 시책 30선

정책고객 3 : 지자체·정부



20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지원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메가시티 등 다양한 논의 지원



21 지자체 간 협력 뒷받침

지자체 간 협약
→ 지방의회 의결·고시 및
후속 조치 이행 의무화
(‘공공협약’ 제도)



22 소외지역 발전 지원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
국토외곽 먼섬
주민 생활기반시설 확충



23 지역특화발전 위한 특례 발굴

특별자치시·도, 인구감소지역
특례 추가 발굴 및 재정비



24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계 제공

생활인구, 가칭지역특성 MBTI 등
개발·제공



25 고향사랑기부제 2.0 추진

기부한도 상향
(개인별 연 500만 원→2,000만 원),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26 공공시설복구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복구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27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선포 건의하는 예외절차 마련



28 문제해결 중심 원팀 정부 운영

조직·정원 유연하게 운영
→ 다수 기관 협력 필요 과제
효과적 수행



29 AI 활용해 업무효율성 증진

AI 도입
AI 행정비서·자동회의록 도입
기반구축
소부처 활용
‘정부전용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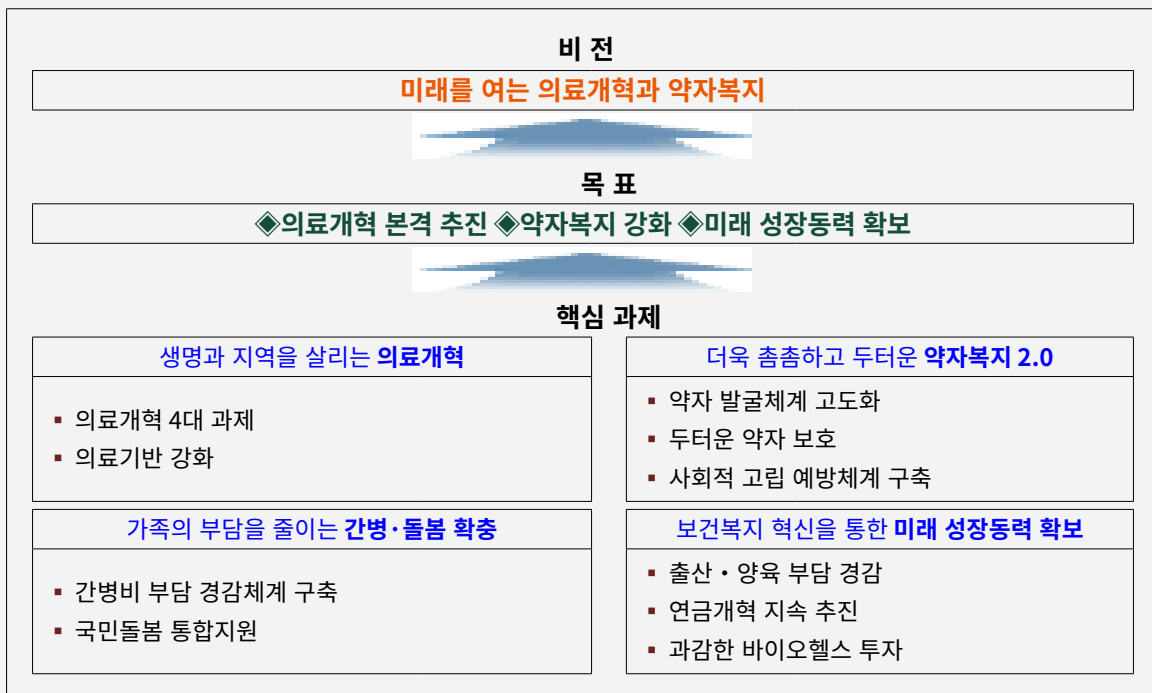
30 칸막이 없는 데이터 공유로 문제 신속 해결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 범정부 데이터 칸막이 없이 공유·활용



보건복지부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정책추진 방향 >



핵심 추진과제 주요 내용으로는

❶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① 의료개혁 4대 과제

- 의료인력 확충
 - (의대 정원 확대) ‘35년 수급 고려, ’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3,058 → 5,058명), 정원 조
 - 정시스템 구축
 - (교육·수련 혁신) 의학 교육 질 제고, 임상역량 중심 인턴제 개편 등
 - (수련환경 개선) 연속근무(36시간 상한) 축소, 수련비용 지원
 - (운영 혁신) 전문의 중심병원 단계적 전환, 공유형 진료 활성화
 - (면허관리 선진화) 환자 안전과 의료질 확보 위한 면허관리체계 개선

- 지역의료 강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 (네트워크 강화) 협력진료(의뢰·회송) 보상 강화, 권역 책임의료기관-지자체 주도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24.下) 도입·확산
 - (지역필수의사 확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의료 교육 및 지역 수련 강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쏠주기 대책 추진
 - (투자확대)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 (병상 관리)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원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이행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 부담경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無과실 국가보상 강화
 - (환자 권리구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감정 기회 보장, 공제회 설립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정당한 필수의료 보상) '28년까지 10조원+α 집중 지원
 - (비급여 관리) 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예:도수치료 등) 금지, 실손보험 개선(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등), 미용 의료 제도 개선 추진

② 의료기반 강화

- (건강보험) 필수의료 및 지속가능성 위한 구조개혁
 - (필수의료 보장)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보장”에 중점, 필수분야 등 부족한 부분에 집중 지원
 - (지불제도 개혁)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양 중심 의료공급 초래하는 불합리·불균형 수가 구조의 정상화
 - (지속가능성 향상) 지출효율화 및 인식 제고*, 보험료 형평성 확보(소득중심 부과체계), 국고지원 확대(11→12.2조원) 등 건전재정 관리
- (국립대병원)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
 - (역량 강화)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획기적 개선
 - (권한 부여) 지역·필수의료 혁신의 리더로 국립대병원 위상 확립
 - (거버넌스) 국립대병원 관련 법 개정 및 예산·조직 복지부 이관으로 현재의 분절적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보건의료정책 시너지 창출
- (건강관리) 예방부터 치료까지 건강관리체계 강화
 - (건강검진) 항목 평가·조정체계, 선택항목 도입 검토 등 근거기반 구축
 - (치(齒)의료) 병원별 역할정립, 수가개선, 노인·장애인 지원 등 정책패키지 마련
 - (만성질환) 동네의원 고혈압·당뇨 등 관리사업 확대(109개 시군구→전국 확대)
 - (비대면진료) 국민 불편 없도록 시범사업 안정적 운영, 중장기 제도 발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지속 추진

②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2.0”

①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

- (ICT·AI 활용) 복지위기 알림 앱 개발('24.上)해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알릴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 (부처 협력) 휴대전화 연락으로도 소재확인 불가 시 경찰조사 협조요청(시범운영 → '24.6 본사업), 집배원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60 → 100개 시군구)

- (중앙-지방 협력) 지자체에 정확한 주소, 채무·관리비 체납정보 제공
- (민-관 협력) 민간봉사단 좋은이웃들(6.8만명) 사업 확대(117→140개 시군구), 전기·가스 검침원(1.3만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28.8만명) 등 협력 강화

② 두터운 약자 보호

- (저소득층) 생계·의료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2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5.47 → 6.09%) ⇨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32%로 상향(35% 목표), 4인가구 기준 21.3만원 인상 (162 → 183만원, 13.2% ↑)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3년 이후 동결됐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24년 3.1만명, '25년까지 총 5만명 추가지원)
 - (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개선(동일 질환 → 1인당 모든 질환 합산, 3.7천명 추가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 (소득 1~3분위 4.8만명)
 - (자활급여) 저소득층 자활근로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6.6→6.9만명)(필수의료 보장)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서비스 보장”에 중점, 필수분야 등 부족한 부분에 집중 지원
- (아동) 보호받을 권리 보장
 - (출생통보·보호출산제) 하위법령, 시스템,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구축 등 법률 시행('24.7) 차질 없이 준비
 - (입양) 국가책임 강화 입양체계 개편 법률 시행('25.7, 국내입양특별법, 국제입양법) 대비 하위법령,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 (자립)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금 매칭지원(1:2)하는 디딤씨앗통장 대상 대폭 확대 (연령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7.2 → 20.5만명)
- (노인) 활기찬 노후 보장
 - (기초연금) 물가상승률(3.6%)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32.3→33.5만원),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확대해 백만개 돌파(88.3 → 103만개) 및 6년 만에 수당 인상 (공익형 27→29만원, 사회서비스형 71.3→76.1만원)
 - (여가) 노인복지관· 경로당의 여가·건강프로그램(음악·운동·교육 등) 및 식사제공 확대,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강화 (개소당 연 250→269만원)
- (장애인) 소득·건강 보장
 - (장애인연금) 기초(32.3→33.5만원) 및 최대(40.3→42.5만원) 급여액 인상
 - (장애인일자리) 공공일자리 2천명 확대(3→3.2만명), 장애 특성 고려한 맞춤형 신규직무 신설 (42→45종)
 - (건강) 건강주치의(중증→전체) 및 방문진료·간호(중증, 연 18→24회) 확대, 치과주치의 강화(중증만/3개 지역 → 일부 경증까지/전국 확대)

③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

- (발굴시스템) 기존 위기가구 발굴시스템과 연계, 고독사 특성 반영한 위험군 선별시스템 구축 및 위험도 판단 도구 개발
- (안부확인)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통한 위험군 대면 확인, AI 안부 전화 등 스마트기술 활용한 모니터링·응급대응체계 구축
- (생활지원) 저장강박 등 고립 위험요인 해소 위한 주거환경 개선, 외출 유도 및 영양관리 위한 식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관계망 형성) 지역주민 간 연결 촉진하는 지역공동체 공간 마련, 사회적 고립 위험군 등 대상으로 교류 프로그램 운영

③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

① 간병비 부담 경감체계 구축

- 간병비 부담 경감
 - (급성기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종합 개선 ⇨ 지원대상 확대('23년 230만명 → '27년 400만명) 및 간병비(사회적 비용) 경감
 -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20개소 1,200명, '24.4~'25) ⇨ 2단계 시범사업('26) ⇨ 본사업 전국 확대('27~)
 - (퇴원환자) 퇴원 후 집에서도 연속적인 의료·간호·돌봄 지원
-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 (품질관리) 공급기관 기준 마련 후 등록제 도입, 간병인 교육·훈련 강화 및 표준계약서 작성 등 투명성 확보
 - (기술활용) 간병·돌봄로봇 등 R&D(450억원, ~'27) 및 복지용구 지원(간병용품 대여, 복지용구 예비급여 등) 확대 통해 서비스 질 향상

② 국민돌봄 통합지원

- (청년) 공정한 기회 및 도약 뒷받침
 - (취약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4개 시도, '24~'25) ⇨ 본사업 전국 확대
 - (자립준비) 전담인력(180→230명) 및 사례관리 대상(2,000→2,750명) 확대, 자립수당(월 40→50만원) 인상
 - (일상돌봄) 취약청년·중장년에 대한 돌봄·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서비스 확대 (51개 시군구, 2천명 → 179개 시군구, 6천명)
- (노인)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 보장
 - (포괄서비스) 건강관리부터 임종까지 빈틈없는 의료·돌봄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초고령사회 대비 재가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건강생활지원) 노화·질병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식사·건강·돌봄·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확대
 - (치매관리) 치매전문 의사가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에 따라 심층상담, 방문진료 등 체계적 관리 시범사업 시행 (20개 시군구, '24.7~)
- (장애인)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
 - (최중증 발달장애) 도전적 행동으로 가족 부담 크고 기존 서비스 이용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획기적 돌봄 지원체계 도입
 - (활동지원) 대상자·단가 인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간호 등 확대
- (전 국민) 돌봄공백 해소 및 서비스복지 실현
 - (마음돌봄) 국민 누구나 우울·불안 등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긴급돌봄)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는 서비스 도입(14개 시도, '24.4~), 한시적(30일) 가정방문형 돌봄·가사 서비스 즉시 제공
- (서비스 기반) 양질의 서비스 공급체계 조성
 -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현장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규제 발굴체계 마련 및 규제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④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① 출산·양육 부담 경감

- (난임) 체외수정 시술별(신선/동결배아) 칸막이 제거, 급여 횡수 건강보험 적용 확대('24.2) 및 소득기준 없이 시술비 별도지원('24.1)
- (양육비) 더 두터운 지원 위해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확대('24.1)
- (의료비) 모든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5 → 0%, '24.1), 소아·청소년 1형당뇨 의료기기 구입부담 경감('24.2~)
- (보육) 영아반 인프라 유지(0~2세반 정원 미달분 기관보육료 지원) 및 단시간·일시적 서비스 이용가능한 시간제보육 확대 (1,030→2,315개반, 125% ↑)지원체계 도입

② 연금개혁 지속 추진

- (국회 공론화 지원) 개혁안 마련 위한 공론화 과정 적극 참여·지원
- (정부 개혁논의 지속) 정부 자문기구 운영 등 후속 논의구조 마련
- (제도개선) 연금개혁과 병행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 추진

③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

- (R&D 혁신) 보건의료 R&D 확대 및 혁신·글로벌 R&D 추진
 - (한국형 ARPA-H) 팬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난제 해결 위해 美 ARPA-H 벤치마킹한 도전·혁신적 연구 착수 (495억원, '24)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글로벌 Top-tier와 협력 플랫폼 구축해 최고 수준 연구생태계 조기 이식 및 획기적 성과 창출 (864억원, '24)
 - (의사과학자) 경력단계별 전주기 지원 강화 및 연구친화 생태계 조성
- (수출 확대) 바이오헬스 수출 반등 견인
 - (의약품)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위한 혁신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
 - (의료기기) 수출 유망품목(영상·치과·진단·디지털·AI) 지원 강화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개척, 선진입·후평가 개선 (절차 간소화, 임상시험 완화, 건보 임시등재 등)
 - (화장품) 美·中 규제대응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북미·일본 등) 전략 추진
 - (외국인환자 유치·진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의료기관·서비스, ICT 시스템 본격 진출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 (규제 혁파) 킬러 규제 체계적 발굴·개선
 - (규제 혁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23.12~)로 부처 칸막이 극복 및 범정부 역량 결집, 규제 개선과제 지속 발굴·점검
- (의료데이터·첨단의료) 국가데이터 자원 구축·활용 제고
 - (바이오 빅데이터)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 등 100만명 규모 빅데이터 구축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 등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실현
 - (건강정보 고속도로) 상급종합병원 중심 의료기관 데이터 연계 확대(860→1,003개소) 통해 국민 삶터 속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 (첨단재생의료) 기존 임상연구와 별도의 치료목적 세포·유전자치료 등 허용 제도 신설 및 희귀·난치 등으로 제한된 연구대상 확대 추진

환경부, 금융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는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함

금융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저탄소 공정전환 등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

-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저탄소 공정전환 및 기술지원 필요 ⇨ 정책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녹색 분야에 정책금융 공급 확대

② 청정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기업이 에너지 탈탄소를 위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

③ 기후기술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개발

- 기후기술은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이며 신성장동력으로 작동 기대 ⇨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녹색 산업을 육성할 필요

④ 민간의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에의 적용방안 마련
-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강화

환경부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및 적용 확대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 고도화
 - (일부개정)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4개 환경목표 대상 EU Taxonomy* 반영 및 신산업 관련 경제활동 추가 등 일부 개정(~'24.12월)

* 기후변화 관련 2개 외 4개 환경목표(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를 대상으로 EU Taxonomy 환경위임법을 추가 제정('23.11월 관보 게재, '24년 적용)

- (고도화) 환경목표별 협의체* 운영('24.6월)으로 현장 적합성 제고 및 3년 검토주기에 따라 기후변화 분야 녹색분류체계 개정 추진('25)

* 4개 환경목표별 관계부처,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여 논의 및 전과정평가(LCA) 등 기후변화 예상쟁점 대상 현장의견 사전청취 병행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상 확대

- (여신) 금융기관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녹색여신 관리지침(금융위-금감원 협력)」마련('24)

< 「녹색여신 관리지침」 관련 제안사항 >

- ▶ **(단계적 적용)** 공시 도입전까지는 시설자금 및 일부 운영비용 등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 녹색여신 적용
- ▶ **(유인체계 마련)** 녹색분류체계 부분 충족시의 처리방안을 담되, 배제·보호기준까지 충족시 우대금리 제공·대출한도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검토 필요
- ▶ **(제도간 연계)** 관리지침 내용에 따라 KTSS(금감원-시중은행), KTAS(기보)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스템의 적용 용이성 및 분류체계 정합성 지속 개선 추진

- (공시) 기후공시 및 환경정보공개 내 녹색분류체계를 자율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분류체계 정보공개(가칭)* 시범사업 추진(~'25)

*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경제활동에서 기인하는 매출액, 자본지출, 운영비용 등

② 녹색투자 기반 조성

-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 (배출량 산정)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공동지침 발간('24년)
 - (산업분류 기준) 금융기관에서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 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연계방안 검토('24년)
 -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하여 환경분야 산업을 분류하기 위한 체계로서, 매년 환경산업통계 조사 시 활용
 - (전과정평가) 기초 화학물질, 철강제품, 배터리 소재 등 탄소규제, 수출품목 등을 중심으로 LCI DB* 확대 구축 및 환경성적 산정방법** 확대
 - * Life Cycle Inventory DataBase - 제품의 전과정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원료채취-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정량화하여 목록화한 것('23년 307개 DB → '30년까지 1,050개 DB)
 - **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하여 인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24.3월 25개 제품군 → '30년까지 120개 제품군)
-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센티브 마련
 - (CCfD) 기업의 혁신 감축기술(그린수소·CCUS* 등) 도입 및 녹색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운영 방안 검토
 - * (CCUS) 발전소,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저장하는 기술
 - ** (CCfD) 기업이 혁신 저탄소 기술 도입 시,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지원제도
 - (재생원료 사용)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를 시행('24년)하고 PET 재생원료사용의무를 최종제품 생산자까지 확대 부여('25년)
-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 (적합성판단 교육)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관련 절차·사례 기반 전문교육 도입·운영으로 금융기관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부담 완화
 - (ESG 교육) 기업 대응이 시급한 규제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 규제별* 심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전과정 평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공급망 실사, CBAM 등
- 기후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 * 환경부는 '10년부터 환경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환경영향이 큰 기업·기관 등의 환경정보(녹색경영전략, 온실가스·환경오염 배출량 등) 공개를 의무화하여 녹색투자 유도
 - (방향) 글로벌 환경공시 표준(ISSB, ESRs) 및 국내 공시를 반영하도록 개편하여 기업의 정보공개 편의성 및 글로벌 정합성 제고

- (주요 내용) △핵심정보(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위주로 항목 개편, △유형분류 단순화, △공개 시점 조정(12월→8월) △법인단위 공개 전환
- (단계적 적용) 국내외 공시기준 도입 일정, 기업 특성(상장사 여부 등) · 규모 등 반영하여 단계적 개편 적용*
 - *타 제도 통해 이미 관리 중인 항목(예: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현황)은 유예 없이 바로 적용, 신규 · 변경 항목(재생에너지, Scope3 배출량 등)에 대해서는 유예 적용 및 기업 지원사업 병행
- (공시 연계)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22.12, 관계부처 합동)에서 정부 내 공시제도 간 의무이행간주 등 연계 합의 → 단계적 연계 추진 필요

③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 녹색분류체계 적합 녹색금융 촉진 및 비용지원 확대
 - (녹색채권) ‘24년도 신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 대상 이자비용 지원(76.8억원)으로 3조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효과 창출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자비용 지원 확대(60억원 → 136.8억원*) 및 우수 녹색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발행기관(기술보증기금) 추가
 - * ‘24년 신규 발행분(약 1,600억원 규모) 및 ‘23년 편입기업 2차년도 이자비용 지원
 - (여신) 녹색분류체계의 활동·인정기준을 고려한 녹색 금융지원*을 통해 매년 2조(‘24~’27), 총 8조 원을 녹색시장에 지속 공급
 - * 녹색경제활동에 대해 환경부와 금융기관(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은행)이 우대금리 공동 지원
- 다각적 녹색시장 자금 공급
 - (수출펀드)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 신설(‘24~’28, 4,000억 원)
 - (보증)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기술보증기금 협업) 신설 및 유망기술 보유기업 대상 보증 규모 확대 추진(‘25~)
 - (스케일업)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대상에 M&A 목적을 포함하는 등 녹색기업 대형화 지원(‘24~)
 -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모태펀드) 조성시 단일 펀드가 아닌 성장단계(초기창업·사업화·스케일업)별 투자를 위한 전용 펀드로 세분화 조성

④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한 녹색투자 가속화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24년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 (할당 강화) NDC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부문 · 업종별 차등적 유상할당 강화 및 BM* 할당 적용 확대 추진
 - * (BM : Benchmark) 동일 업종 배출시설의 배출원단위를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과거 배출량에 따라 할당하는 GF(Grand-Fathering) 방식 대비 기술진보를 유도
 - (시장 활성화) 간접투자 기반마련(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거래형태 다양화,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 도입 방안 마련 등
 - (기업 지원) 배출량 검·인증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경감
-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
 -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개인 등 제3자의 간접투자자로 시장 활성화 및 가격 변동성 완화 추진 ⇒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및 거래량 증가로 기업의 녹색투자 촉진
 - *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23.9, 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ETN, ETF) 출시 기반 마련(‘24~) 등

- 배출권 위탁거래 및 선물시장 도입
 - (위탁거래)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고, 제3자 참여 확대를 위한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배출권거래법 개정, '24.2)
 - (선물시장)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 유인을 위해 가격 변동성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선물*시장 도입 세부 운영방안 마련

* 미래의 정해진 날짜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배출권을 매도·매수할 수 있도록, 장래 배출권 가격을 미리 확정

< 녹색투자 확대방안 >

목표

녹색투자 활성화를 토대로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추진방향

- ◆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제도 등 기반 공고화
- ◆ '27년까지 총 30조원 녹색시장 자금 공급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및 적용 확대

- 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 ②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대상 확대

2. 녹색투자 기반 조성

- ①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 ② 제도·인센티브 마련
- ③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 ④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3. 녹색시장 자금공급 확대

- ① 녹색금융 촉진 및 비용지원 확대
- ② 다각적 녹색시장 자금 공급

4.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통한 녹색투자 가속화

- 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 ②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
- ③ 배출권 위탁거래 및 선물시장 도입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22 시행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에 탁송품 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수출·수입 통관목록 자료, 수출 관련 우편물 목록과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제2조제1항제21호, 제2조제1항제128호 신설 등)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22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	--------------------------------	--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우회덤핑의 요건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선박회사 및 물품을 정하고,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9조의3, 제12조제2항제1호,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2항, 제20조의2 등)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22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하고, 각 업계의 금형(金型)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업종과 상관없이 5년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6조, 제27조의2제2항, 제33조2항 신설, 제44조제3호 등)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22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식을 정하고, 과세특례 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군사위성체계·유무인복합체계 제작시설 및 수소환원제철시설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조제9항 신설, 제4조의3제2호, 제7조제6항, 제8조의3, 제13조의9제8항 등)

기획재정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22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장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인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22 시행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확인하는 날인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4조의6제1항,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등)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3-22 시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을 명하도록 하되, 행정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한 사정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6조제3항 신설, 제26조제4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29 시행예정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288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 됨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범위를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의 지능정보에 해당하는 기술과 3D 프린팅, 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로 정하고, 탄소중립활동의 범위를 바이오 원료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등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로 정하며,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와 공동행위 인가 절차를 병행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과 공동행위 인가 신청서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조의4 신설, 제3조의5 신설, 제17조의2 신설, 제24조 등)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1-01 시행예정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심의·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고, 미승인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은 제조·수입 가능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제1항제8호 삭제, 제48조의2제1항, 제48조의3제1항, 제48조의17 등)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

2025-01-01 시행예정

이 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가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위 제도들을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100명 이내 및 30명 이내로 확대하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1조~12조, 제17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9조제10항 등)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2024-03-29 시행예정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회용기 회수·세척하는 사업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기·포장의 회수·세척 사업 또는 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의 회수·세척 사업 등으로 정하고, 5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 신설, 제48조제3항제1호, 별표 1의2 제1호 등)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19 시행
(다만, 별표 8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중심상업지역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고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9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인 소형 주택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제85조제3항제1호, 별표 8 제1호나목)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19 시행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다수가 공유한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토지 또는 건축물 외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아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의 비율 및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중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비율을 재정비촉진지구는 ‘2분의 1 이상’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분의 3 이상’으로 각각 낮추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33조제1항제1호가목, 별표 1 제2호, 별표 1 제4호, 별표 1 제5호)

국토교통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2024-03-19 시행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시행일 별도 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양도 이전까지 거주무기기간을 준수하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만 거주무기기간을 개시하면 되도록 하고, 거주무 사실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며, 거주무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57조의2제1항,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101조제1호의3 신설, 제106조제4항제1호)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

2024-03-19 시행

현재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을 3개 이하로 한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도심 내 1인·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10조제1항제1호)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4-09-20 시행예정

대학 교원 등이 벤처·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1년 이내로 한정하던 휴직 연장기간 제한을 폐지하며,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제16조제3항, 제16조의3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3-19 시행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제30조의5제1항제3호)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20. ~04.29.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종합주류도매사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생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유통할 수 있도록 전업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주류 제조·판매면허 취득 제한대상 법인 임원의 범위 규정 (안 제10조의2)
 - 주류 판매·제조면허를 재취득 하려는 경우 면허의 재취득을 제한하는 신규 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임원으로 규정함
- ②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안 제12조의2)
 -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음식점 등 음주가 허용된 장소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국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면허취소의 예외 사유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
- ③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전업의무 면허요건 완화 (안 별표3)
 - 종합주류도매업자도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주류이외의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
- ④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명령위반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 변경 (안 별표4)
 - 종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주세보전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에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3\)](tel:044-215-43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3.20. ~04.29.
-----------	------------------	------------------------

뉴스페이스 시대에 신속한 우주로의 접근 및 우주 산업·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사면허 신설 및 안보상 필요시 발사허가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로 인한 행·재정상 부담 등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음.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 고려 시 국방부 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두자는 요구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소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 가능 조항 신설 (안 제11조의2)
- ②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에 발사허가 권한이 병존함을 명시함 (안 제11조제6항)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tel:044-202-4629) (전화: 044-202-4629, 팩스: 044-202-6023)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19.
~04.29.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변경 (안 제3조, 5조, 6조, 8조, 18조, 19조, 20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tel:044-202-2911) (전화: 044-202-2911, 팩스: 044-202-3942)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19.
~04.29.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본사가 소재한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224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생산시설 설치 및 변경 승인 신청에 필요한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등 서식 변경** (안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tel:044-202-2911) (전화: 044-202-2911, 팩스: 044-202-3942)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18.
~04.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4.7.10. 시행)에 따라 세부 규정을 보완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하고, 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주체 확대** (안 제8조제4항제1호)
- 환경부장관 외 유역·지방환경청장까지 협약체결 주체 확대
- ②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등 위탁 근거 마련** (안 제48조제3항제1호)
-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여부 및 개선·중단명령 준수여부 조사등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근거 마련
- ③ **폐 LED 조명의 EPR 대상 조정 및 재활용기준비용 감경** (안 별표6의8호 나목)
- 폐 LDE 조명 중 '평판형'을 재활용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구형' 및 '직관형'의 재활용기준비용 감경
- ④ **법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항 수정** (안 별표8의 2호 커목 및 터목)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tel:044-201-7392) (전화: 044-201-7392, 팩스: 044-201-7394)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18.
~04.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4.7.10.시행)사항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고시 세부 절차 마련** (안 제23조의2 제1항~4항)
-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등

※ 문의처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92, 팩스: 044-201-7394\)](tel:044-201-7392)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20.
~04.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및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안 제29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시간 확대 (안 제104조의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함
-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특례 규정 정비 (안 제26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특례 규정을 정비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tel:044-202-735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20.
~04.29.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신설 예정인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관련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절차 마련 (안 제51조 및 제52조)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 신설에 따라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
- ②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수급자격 명확화 (안 제115조의3)
 -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
- ③ 고용보험 관련 민원서류 간소화 (안 제95조 등)

-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tel:044-202-7357)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18.
~04.29.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며,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층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

이에 따라,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합심의를 실시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절차를 보완하고,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감리자와 입주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동위원회 구성절차 보완 (안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의 요건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시·도 소속 공무원을 추가
- 시·도지사가 통합심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닌 시·도지사가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

② 감리자의 업무 추가 및 업무절차 규정 (안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의2)

- 감리자의 업무에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추가
- 감리자는 시공자격 여부 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인으로부터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리자는 불법하도급 적발 시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③ 사전방문 시 하자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 (안 제53조의2제2항)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의 조치기한을 입주예정자와 협의하는 경우,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한 하자인 경우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협의

④ 사전방문 시 하자 조치계획의 입주예정자 통보 (안 제53조의2제3항)

-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 및 신속한 하자 조치를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 뿐 아니라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하도록 규정

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감리자와 사업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별표 1 및 별표 5)

- 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및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등록말소토록 규정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18.
~04.29.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또한, 최근에는 정자교 인도부 붕괴사고 등 시설물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상향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기초점검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하여, 보다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규정 등 (안 별표11)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함

②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 (안 별표5)

- 기존에 초급기술자였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중급기술자로 상향하여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함

③ 정밀안전점검의 의뢰 제한 규정 (안 제8조제4항)

- 현행 법령상 안전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함
- 금번에 신설된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점검의 의뢰를 제한하고자 함

④ 기타 경미한 용어 수정 (안 제14조제1항제4호 등)

- 법 개정에 따라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수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596, 팩스: 044-201-5553\)](tel:044-201-4596)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18.
~04.29.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장비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 신설 (안 제24조의2, 제25조의2 신설 등)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여,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을 통해 기존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휴업·재개업·폐업·양도에 대한 신고 절차도 신설

②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점검측정장비 기준 신설 (안 제23조 및 별표5)

-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장비 목록을 신설

③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 (안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신설)

- 현행 법령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에 대한 규정을 준용

④ 기타 경미한 용어 수정 (안 제22조 등)

- 법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서식에 있는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수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전화: 044-201-4596, 팩스: 044-201-5553\)](tel:044-201-4596)

국토교통부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18.
~04.29.

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 회사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라는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특정 항공사들 간의 운수권 등 이전 근거가 부재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당사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유지·복원을 촉진하고,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업결합 상황에 한정하여, 항공사가 국내외 경쟁당국이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반납 시에 이행하려는 시정조치의 세부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신설)
- ② 항공사가 시정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반납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해, 현행 제4조부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별도의 운항 의무를 부과하며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신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전화: 044-201-4215, 팩스: 044-201-5624\)](tel:044-201-4215)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3.20.
~04.29.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시설 증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관리 및 녹지지역에 대안학교 등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제한 완화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의 공장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려고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안 별표 19 제2호나목)**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부터 이격되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도록 함

②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 상향 (안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60퍼센트 범위에서, 이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경우에는 7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군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③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확대 (안 제84조의2, 제93조의3)

- 공장 준공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용도지역 변경 등의 사유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증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축을 허용하도록 함

④ 녹지 및 관리지역에 대안학교 등 입지 허용(안 별표 15 제1호가목 및 제2호사목, 별표 16 제1호다목 및 제2호바목, 별표 18 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 별표 19 제1호다목 및 제2호바목)

-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자연친화적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입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도록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9, 팩스: 044-201-5569)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20.
~04.29.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도로 경계를 기준으로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것을 지자체가 관광객의 수요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이격 기준과 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입지 허용하는 것과 연계하여 설치 가능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입지 제한 완화 (안 별표 2 제8호)

- 지자체별로 관광객 수요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이격 기준 및 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

②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세부 입지 기준 마련 (안 제12조 및 별표 2 제목)

- 생산관리지역에서의 휴게음식점의 세부 입지 기준을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기준으로 규정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9, 팩스: 044-201-5569)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3.22.
~05.01.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청(시·도지사)**이 등록사업자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에게 실적 보고시 관련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사업실적 내용에 자금조달현황 작성란 신설 (별지 제13호 서식)
- ② 실적보고 작성방법 중 일부사항 상세 규정 및 일부 용어 변경 등 (별지 제13호 서식)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mailto:국토교통부_부동산개발산업과) (전화: 044-201-3454, 팩스: 044-201-5661)

법제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024.03.18.
~04.29.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14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안 제3조)
 - 도시지역, 자연공원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안 제4조)
 -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해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③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안 제10조)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tel:044-200-6580)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3.19.
~04.29.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는 다음 연도에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1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고시에 규정하고 있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상향하여 규정하고 우수한 영업소에 대한 선정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려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여 운영 중인 현행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총리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일부 시설에 관한 기준은 시설기준에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안 제25조의4, 별표 1, 별표 4의2, 별표 9)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조사·평가한 당해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퍼센트 이상의 업소를 그 해 우수영업소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25조의5)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위하여 기존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4, 팩스: 043-719-2450\)](tel:043-719-245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2024.03.19.
~04.29.

자산운용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금감원 검사 등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하위규정에서 규율할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 보완 (안 제4-77조, 4-93조)**
 -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의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의무 부여
- ②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안 제104조, 제109조, 안 제4-82조, 4-92조의3)**
 - 합리적인 신탁보수 제시, 금전 편입 종합재산신탁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고, 신탁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
- ③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의 규정화 (안 제6조, 제84조, 별표1, 안 제4-77조, 제4-78조의3, 제4-78조의4, 제4-91조)**
 -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토지신탁, ISA 관련 일부 규율, 유권해석으로 운영중인 퇴직연금·사모펀드 관련 일부 규율을 규정화하여 명확성 제고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전화: 02-2100-2661, 팩스: 02-2100-2679\)](tel:02-2100-2661)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2024-03-19 발의
---------------	---------------------------------------	---------------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 공개(제33조제2항)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확률 미 표시나 거짓 표시와 관련된 게임 이용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으며, 민법 등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하여 권리구제가 쉽지 않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더불어 이와 같은 게임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3조의2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예정된 회의 일정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25(월) 10:00	제4회 생명존중의날 기념행사 및 지자체 책임자 정책토론회 - '자살예방'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자!	강기윤 의원실, 한국생명운동연대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6(화) 09:00	제1회 아시아투데이 K-산업비전포럼 2024 - 다시 짜는 글로벌 경영전략	정운천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3/28(목) 10:00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이자스민 의원실 외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자료집 등	3/25(월)	「THE 현안」 제4호 발간 - 2024 미국 방위산업전략	국회도서관	
	3/27(수)	「금주의 서평」 제671호(2024-12호) 발간 - 도서명 :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 - 저자 : 테레사 뷔커		
	3/29(금) 14:00	2024년 제2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 글로벌 AI 선도를 위한 전략 및 입법적 과제		국가전략 정보센터
	3/29(금)	「2024 NABO 경제전망」 보고서 발간 - 실질GDP, 민간정부소비 등 지출변수 전망 등	국회예산정책처	
	3/29(금)	「2024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6호 발간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내용 및 향후과제		
	3/25(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1호 발간 - 배터리 순환경제 기술·산업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2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3/18(월) 10:00	지금, 어디에도 없는 성평등 : 정치와 정책의 방향 모색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자료집 등	3/20(수)	「금주의 서평」 제670호(2024-11호) 발간 - 도서명 : Z세대 트렌드 2024 - 저자 : 대학내일20대연구소	국회도서관	
	3/20(수)	「World&Law」 제2024-6호 발간 - 교묘한 암표 판매, 뿌리부터 뽑으려면?		
	3/20(수)	「예산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3/18(월)	「이슈와논점」 제2214호 발간 -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3/18(월)	「NARS 현안분석」 제317호 발간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통합연구의 필요성과 국회입법 조사처의 역할		
	3/18(월)	「NARS 브리프」 제35호 발간 -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3/18(월)	공무 국외출장보고서 - 독일, 프랑스의 신산업 현황 조사		
	3/19(화)	「이슈와논점」 제2215호 발간 - 美 IRA 시행 후 1년 반 경과, 평가와 정책과제		
	3/20(수)	「이슈와논점」 제2216호 발간 -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		
	3/20(수)	「이슈와논점」 제2217호 발간 - 4촌 간 혼인 가능해질까? 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의		
	3/21(목)	「이슈와논점」 제2218호 발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방안		
	3/21(목)	「NARS 브리프」 제36호 발간 - 북한·남북관계 학제간 연구 플랫폼 형성		
	3/22(금)	「이슈와논점」 제2219호 발간 - 미국 FTC의 알고리즘 삭제 명령,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 규제 시사점		
	3/22(금)	「NARS 브리프」 제37호 발간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이후 현황 및 보완 과제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3.18~03.24)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3/18(월)	지적재산권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
3/18(월)	건설/부동산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19(화)	지적재산권	UPC 항소심 법원의 최초 실체판단 사례 - 가처분 사건의 증명 정도에 관한 “more likely than not” 기준의 제시
3/21(목)	ES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
3/22(금)	해외 규제	EU 상주대표회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 - 적용대상 축소,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 적용 등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